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976 호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년 월 일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이옥규 의원 등 8인  |
| 발의연월일 | 2022년 1월 10일 |

#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976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
발 의 자 : 이옥규, 임영은, 박상돈,  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  
김국기, 원갑희

## 1. 개정이유

-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 명확화(안 제2조제3호)
-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 정비
  - 「주택법」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→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안 제2조제1호)
  -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(안 제13조)
  - 제15조제3항제1호 → 제16조제3항제1호(안 제17조제3호)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르도록 조항 개정(안 제19조제2항)

○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- 호선한다 → 선출한다(안 제16조제2항)

- 개의 → 개의(開議)(안 제19조제3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##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주택법」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”을 “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”를 “국가·지방자치단체·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·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선출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3호 중 “제15조제3항제1호”를 “제16조제3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열며”를 “연 1회 개최하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개의회”를 “개의회(開議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영구임대주택”이란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「주택법」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사업주체”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·공급·관리하는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13조(업무의 위탁) 도지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</p> 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영구임대주택”이란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사업주체”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·공급·관리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)·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업무의 위탁) 도지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</p> |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한다</u>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1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<br/>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제15조제3항제1호</u>부터 제5호의 위촉직 위원이 해당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</p> <p>제19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정기회의는 <u>상·하반기</u>로 나누어 <u>연2회</u> 열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연다.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</u>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</p> | <p>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선출한다</u>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<br/>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16조제3항제1호</u>부터 제5호의 위촉직 위원이 해당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</p> <p>제19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정기회의는 <u>연 1회</u>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연다.</p> 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(開議)</u>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</p> |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결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| <p>로 의결한다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|

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

제3조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3. 노약자·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4.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5.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의2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### 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,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